

■ 건강

# 키 크면 암 걸릴 확률 높다

흡연, 오염된 공기, 불에 구운 붉은 고기.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발암의 요인들이다. 그렇다면 뜨거운 차는 어떨까? 또 키의 크기가 발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

과학 전문 사이트 '라이브 사이언스' (livescience.com)가 암을 부르는 뜻밖의 요인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 뜨거운 차

차를 마시는 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 그러나 반드시 어느 정도 식혀서 마셔야 한다. 2018년 중국의 연구진이 45만 명의 생활습관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뜨거운 차를 즐기는 이들은 그 세 가지 취미가 없는 이들에 비해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다섯 배 높았다.

◆ 오래 앉아 있기

정적인 생활이 암을 부른다. 많이 움직일 것. 육체적 활동이 늘면 폐암, 결장암, 유방암 등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2016년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연구진이 합동으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에 비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은 42%, 폐암은 26%, 결장암은 16%가 낮았다.

◆ 키

키가 큰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보다 암에 취약하다. 201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장신인 경우, 매 10센티미터마다 암에 걸릴 위험이 10%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

구진에 따르면 키가 더 큰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는 세포 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키가 클수록 몸 안에 세포가 더 많고, 세포들이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다.

연구팀은 "키와 암의 상관관계는 높은 편이지만, 키가 크다고 반드시 암에 걸린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장신보다는 흡연과 과식 등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다리 길이도 영향을 미친다. 2016년 미네소타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다리가 긴 사람들은 짧은 사람들에 비해 결장암에 걸릴 위험이 42% 컸다.



◆ 술

술은 구강암, 인후암, 유방암, 대장암, 식도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 주당만 위험한 게 아니다. 적게 마신다 하더라도 안 마시는 사람보다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2018 영국 의 MRC 분자 생물학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혈액 내 줄기세포의 DNA에 손상을 입혀 암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다.

◆ 체중

과체중 역시 암의 위험 인자. 2017년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평균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 담낭암, 갑상선암, 췌장암 등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컸다. 특히 식도암, 위암, 간암, 신장암에 걸릴 위험은 두 배 정도 높았다.

■ 법률 칼럼

# 이민 절차 지연으로 더 이상 미성년 자녀로서의 혜택을 볼 수 없다면?

미국 이민법에서 21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자녀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 자녀는 Immediate Relative로서 언제나 문호가 열려 있으며, 이전에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님의 취업이나 가족을 통한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dependent의 자격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영주권 진행 케이스의 펜딩(pending, 계류)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21세가 넘어 버린다면 (age-out) 미성년 자녀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펜딩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은 영주권을 진행하는 지원자나 그 가족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2002년 미국의회에서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아동 신분 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보호법에서는 이민비자가 유효하게 된 시점의 실제 나이에서 해당 이민 청원서의 펜딩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이민법상의 미성년 자녀로 간주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군의 할머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할머니는 A군의 어머니를 기혼 자녀로서 초청하는 가족 초청 청원서(I-130)를 제출하셨습니다. I-130 청원서 제출 당시 A군은 19세였으며, I-130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청원서의 승인 시점에는 20.5세로 미성년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에 대한 이민비자 문호가 열리는데 (A군의 어머니가 승인된 I-130을 근거로 체류 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하는 I-485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시점) 3년이 걸려서, A군의 나이는 22세가 되어서야 A군의 어머니는 영주권을 위한 신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I-130청원서가 승인된 시점에는 A군이 20.5세로서 미성년 자녀였지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A군은 22

세가 되어 더 이상 미성년 자녀로서 어머니의 I-485신청서에 자녀로서 함께 기재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 신분 보호법 (CSPA)을 A군에게 적용해 보면, 현재 I-485를 제출할 수 있게 된 시점의 나이인 22세에서 I-130의 제출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인 18개월 (1.5)을 차감하여 이민법상 아직 미성년자인 20.5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은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의 I-140청원서의 펜딩 기간만큼을 차감해 주면 아동 신분 보호법을 통해 인정받는 나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동 신분 보호법의 제정 취지가 케이스의 펜딩 기간, 즉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얻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기 위함으로, 아이러니하게 펜딩 기간이 짧은 케이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위 A군 케이스에서 I-130 청원서와 관련 서류 준비를 잘 하고 별 지연 없이 케이스가 잘 진행되어 3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I-130의 승인 시점과는 상관없이, 시민권 기혼 자녀의 이민 문호가 열리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기간은 3년으로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호가 열린 시점의 A군의 나이인 22세에서 I-130펜딩 기간인 3개월을 빼면 21.75세이므로, 오히려 빨리 승인된 청원서의 해당 자녀가 이 보호법을 통해서 미성년자로서의 신분을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이민케이스를 의뢰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